

전임교원 특별채용 임용 규정

□ 제정 : 2004. 04. 01

□ 개정 : 2006. 06. 3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2 및 제12조, 신규교원임용세칙에 의거하여 학문적으로 명성이 높은 석학 또는 연구실적과 수준이 탁월한 교원 및 외국인교원을 초빙하기 위하여 비공개 전형(이하 "특별채용"이라 한다)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임용) 특별채용은 해당학과(부) 또는 학장의 추천을 받아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통하여 특별채용 할 수 있다.

제3조(대상) 특별채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할 수 있다.

1. 신설 대학(원) 또는 신설학과(부)의 최초 교원을 임용하는 경우
2. 전임교원의 신체, 정신상의 사유로 장기간의 휴직을 할 경우 해당 휴직기간동안 한시적으로 전임교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3. 교육경력,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자로 공개전형에 의하여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4. 재외 한국인 학자 또는 외국인을 특별히 임용하는 경우
5. 대학의 특성화 분야, 첨단과학기술 정보분야, 특수한 교과목(예·체능계 관련 특수기능), 외국어교육을 담당할 자를 임용하는 경우

제4조(자격) ① 해당전공분야에 충분한 능력과 인격을 갖춘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 단, 예·체능, 실험실습, 실기, 외국어교육담당 분야는 학사학위 이상으로 해당분야의 실무 경험이 우수한 자.

②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 관리법상 입국자격을 부여받은 자

제5조 (직위) 교원인사규정의 임용자격에 의한다.

제6조 (기타) 이 규정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본교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